[별표2]

보고 절차 및 방법

보고 절차	· 함장·정장·파출소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, 해양경찰서장이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,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사국장에게 직접 또는 소속 수사과장을 통해 보고(해양경찰청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까지 보고하고,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에 보고) · 단, 필요시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에게 동시보고
보고 시점	· 사건 발생 또는 검거 시 · 필요성이 있는 경우 첩보입수·수사(입건전조사) 착수 시, 압수수색·체포·구속영장신청, 수사종결 등 중요수사 진행사항 발생 시에도 보고
보고 종류	· 사건발생 시는 발생보고 · 피의자검거시는 검거보고 · 첩보입수, 수사(입건전조사) 착수 시, 수사종결 시, 중요수사 진행사항 발생 시는 수사사항보고
보고 방법	·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고 · 긴급 시에는 일단 유·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,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고